

학교예술강사 고용계약주체 중앙 일원화에 대한 재요청 동의서

1. 본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기관명:(재)서울문화재단)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정상화 및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예술강사 근로계약 체결부터,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계약주체를 중앙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우선 일원화 할 것과 이를 위해 필요한 협의체제 마련을 재요청 하며, 현재와 같이 각 운영기관과 예술강사 간 직접 고용계약 방식은 수용이 불가함을 동의합니다.
2. 또한, 향후 중앙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인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을 운영함에 있어, 고용계약 주체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지역의 실정 및 현황에 맞는 사업운영개선 등 사업발전을 위하여 16 개 광역센터와 함께 모든 과정에 동참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8일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관명 : 서울문화재단]

대표자 : 조 선 희 [직인]

공동대응 회신 공문(안)

- 공문제목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개선(강사계약체결 중앙일원화) 재요청
- 수신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예술교육과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 공문(안)
 1. 관련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2387(2015.11.09)호
 2.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귀 부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 광역 시도문화재단 등에 소속되어 운영 중인 16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난 2015. 10. 23 인천문화재단을 통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문제점 개선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술강사와의 계약체결 주체를 2016년부터 중앙(진흥원)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이는 지역운영기관이 계약체결 당사자임에도 예술강사의 근무조건이나 처우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바 없고, 제도개선이나 각종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형식적인 입장임에도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가 일방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이었으며, 자율성과 권한의 이관 없이 중앙에서 담당하던 운영사무를 지역에 분담시킴으로 인한 문제들을 선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5. 하지만, 제도설계, 사업계획수립, 예산의 편성과 집행지침, 임금(강사료)책정, 선발, 평가, 배치 등 강사처우수준 결정과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권한을 가진 귀 부처(기관)는 예술강사 인사·노무와 관련된 노조대응(형식적 사용자인 운영기관과의 단체교섭), 노동청 진정사건(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임금체불 지급요청 건 등), 고소·고발사건(단국대 산학협력단 형사고발 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간 갈등과 법적다툼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또한, 귀 부처(기관)에서는 문화예술교육과-2387(2015.11.09)호를 통해 2017년

부터 학교 예술강사의 사용자를 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선발 및 근로계약 체결 등을 직접 담당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으나, 세부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논의와 협의는 현재까지 일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16개 광역센터는 광역센터간 협의(4차, 2015.12.04, 광주)를 통해 **2017년 예술강사 선발, 배치,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중앙일원화하기 전인 2016년부터 배치강사에 대한 계약체결 주체를 진흥원으로 우선 일원화 할 것을 재차 요청**하니 사업추진의 안정적 기반 조성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적기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16개 광역센터는 계약주체 중앙 일원화 조치가 우선 시행된다 해도 현재 수행 중인 사무업무와 기능은 기존과 다름없이 유지할 것이며, 업무 추진 체계 재설계 및 중앙과 지역 간 역할분담 협의 등에 동참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운영기관 공동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시, 2016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계약체결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으며, 관련업무의(업무시점 2월 말 ~ 3월 초)정상적인 수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더불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국가문화예술교육 정책구현과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본연의 기능에 충실히 기여할 수 있도록 상기 요청 사항을 적극 수렴함과 아울러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